

심 사 보 고 서

○ 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(안)

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452호
----------	-------

2016. 10. 14.(금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6년 9월 27일

○ 회부일자 : 2016년 9월 28일

다. 상정일자 : 2016년 10월 7일

○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서승우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□ 출연목적

-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 제3조3항에 따라 지방행정 및 지역개발에 필요한 연구·조사를 위하여 행자부 및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재원 지원
※ 전국 시도 균등 출연사업

□ 출연 예정액 : 200,000천원(도비 100%)

○ 산출근거 : 2017년 광역시도 출연금 3,300백만원

- 16 시·도 각 200백만원 (세종시 100백만원)

※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사회 의결('14.12.23.) : 시도 기획실장 + 행자부 자치제도정책관 등

〈각 시도 출연 중기계획(2016~2020)〉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출연금	1.5억원	2억원	2억원	2.5억원	2.5억원

□ 출연계획 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: 천원)

구 분 (기준보조율)	2016년			2017년 (C)	증감 (D=C-A)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
도비(100%)	150,000	150,000	0	200,000	50,000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)

○ 본 계획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고,

<지 방 재 정 법 >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○ 동 계획안의 출연금은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 제3조(출연금)에 따라 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도비 2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 계획안의 법적 근거는 적법하며,

<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>

제3조(출연금)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,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.

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,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또한 지방행정연구원의 지자체 출연요청액 3,300백만원에 대한 시·도별 균등 부담액(16개 시·도 각 200백만원, 세종시 100백만원)으로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임.

[2016~2020 출연금 중기계획(안)]

(단위:백만원)

구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세입 계	12,942	13,478	13,894	14,322	14,763
출연금	4,741(36.6%)	6,100(45.2%)	6,100(43.9%)	7,450(52.0%)	7,450(50.5%)
국가출연	2,241(17.3%)	2,800(20.8%)	2,800(20.2%)	3,300(23.1%)	3,300(22.4%)
시도출연	2,500(19.3%) ·시도당 1.5억 ·세종시 1억	3,300(24.4%) ·시도당 2억 ·세종시 1억	3,300(23.7%) ·시도당 2억 ·세종시 1억	4,150(28.9%) ·시도당 2.5억 ·세종시 1억	4,150(28.1%) ·시도당 2.5억 ·세종시 1억
자체수입	8,201(63.4%)	7,378(54.8%)	7,794(56.1%)	6,872(48.0%)	7,313(49.5%)
시도 출연금 증액분		증 8억	-	증 8억	-

- 다만,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 인하여 우리 도가 얻는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,
- 지방행정연구원 사업 중 시·도 분담 출연금으로 시·도가 필요로 하는 연간 1개의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도 도정에 꼭 필요한 과제가 선정되어 내실있는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제선정에 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고, 연구결과가 도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[2016년도 특별·광역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제 수행실적]

- 수행 과제 : 17과제 (시도 당 1과제)

구 분	과제 수	의뢰 시.도
상반기	16과제	서울, 부산, 대구, 대전, 울산, 세종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남, 경남, 제주, 광주, 경기, 전북, 경북
하반기	1과제	인천

※ 우리도 :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 항공 MRO 허브 조성을 위한 국가 핵심지원시설 구축 방안('16.3~10월)

[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업계획]

구 분	2016년	2017년	비 고
출연금	25억원 - 시·도 : 각 1.5억원 - 세종시 : 1억원	33억원 - 시·도 : 각 2억원 - 세종시 : 1억원	증 8억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정책개발 및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도 정책과제 ▶ 지방국정과제 ▶ 지방자치 발전과제 ●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● 지방자치실천포럼 ● 공무원 역량 강화 ● 현안 이슈 대응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7과제(시도별) · 12과제 · 20과제 · 30과제 · 포럼 정착 및 성과창출 · 시책 및 직무교육 (5~6과정, 2박3일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계속) (계속) · 포럼 활성화 및 성과 확산 (계속) · 시도별 1~2건(신규) 	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」 1부.

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

의안 번호	45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9. 27 .
제안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□ 출연목적

-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 제3조3항에 따라 지방행정 및 지역개발에 필요한 연구·조사를 위하여 행자부 및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재원 지원
※ 전국 시도 균등 출연사업

□ 출연 예정액 : 200,000천원(도비 100%)

- 산출근거 : 2017년 광역시도 출연금 3,300백만원
- 16 시·도 각 200백만원 (세종시 100백만원)

※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사회 의결('14.12.23.) : 시도 기획실장 + 행자부 자치제도정책관 등

〈각 시도 출연 중기계획(2016~2020)〉

구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출연금	1.5억원	2억원	2억원	2.5억원	2.5억원

□ 출연계획 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: 천원)

구분 (기준보조율)	2016년			2017년 (C)	증감 (D=C-A)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
도비(100%)	150,000	150,000	0	200,000	50,000

1 출자·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정책기획관실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정책관리팀	송재구	이선호	반안나	2134

기관명	한국지방행정연구원																			
출자·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 표 : 하혜수 (*재단법인) ○ 일반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-6 - 인 력 : 63명(원장1, 연구·전문직40, 투자분석직8, 연구지원직14) 																			
출자·출연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자·출연 예정금액 : 200,000천원(도비 200,000천원)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백만원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 (기준보조율)</th> <th colspan="3">2016년</th> <th rowspan="2">2017년 (C)</th> <th rowspan="2">증감 (D=C-A)</th> </tr> <tr> <th>계(A+B)</th> <th>당초(A)</th> <th>추경(B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도비(100%)</td> <td>150,000</td> <td>150,000</td> <td>0</td> <td>200,000</td> <td>5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산출근거 : 2017년 광역시도 출연금 3,300백만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6 시·도 각 200백만원 (세종 100백만원) ❖ 증감내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회계 세입규모 매년 3%(물가상승률) - 연구인력을 2017~2020년까지 매년 2인 증원하여 연구인력 확보(정원대비 9명 결원) -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연구원 이전에 따른 추가 운영재원 소요 ❖ 2016~2020 광역시도 출연금 중기계획(안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16년 1.5억원 / '17년 2억원 / '18년 2억원 / '19년 2.5억원 / '20년 2.5억원 					구 분 (기준보조율)	2016년			2017년 (C)	증감 (D=C-A)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도비(100%)	150,000	150,000	0	200,000	50,000
구 분 (기준보조율)	2016년			2017년 (C)	증감 (D=C-A)															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															
도비(100%)	150,000	150,000	0	200,000	50,000															
출자·출연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및 주민 행복도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·개발 활동 수행 																			
근거법령	<p>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」 제3조3항</p> <p>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
지도감독부서인견(중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자부와 시도가 공동 설립한 연구기관으로서, 각 시도는 연구원 운영비, 시설비, 기금에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※ 각 시도 균등 출연 ○ 중앙-지방간 상생·균형적 발전을 위한 역할 수행 등을 고려할 때,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함 														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자·출연기관 현황 3. 출자·출연사업계획서 																			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(경영평가) 2015년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경영평가 : “보통”
 - 행자부 산하 9개기관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기관장 성과연봉에 반영
 - 연구원의 주요사업인 연구분야에 있어 높은 점수를 받음(7개 기관 중 4위)
 - ※ 양호 2, 보통 2, 미흡 3
- (성과계획서 성과 달성도 : 행정자치부기획재정부)
 -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성과 만족도
 - 실적 : 89.8점(103.8% 달성) / ·목표 : 86.5점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한국지역행정연구원은 행자부와 시도가 공동 설립한 연구기관으로, 우리도를 비롯한 각 시도는 설립주체로서 매년 일정부분 출연금을 연구원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음 ※ 각 시도 매년 균등 출연
 - 우리도 출연내역 : '14년 100백만원 / '15년 200백만원 / '16년 150백만원
- 지방행정에 관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과제를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및 정책지원 기능을 지원하는 등 지방행정 발전에 중요한 역할 담당 ※ 지자체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(행자부 고시 제2014-2호, '14.11.29.)
- 이상과 같은 중앙-지방간 상생·균형적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의 지속적 역할 수행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

3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

(단위:천원)

구 분	2016년 (C)	2017년 예산안		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		기관 요구액(A)	실과 산정액(B)	증감(B-A)	
출연금	150,000	200,000	200,000	-	50,000

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
여	여	부	여	여	여	여

1-2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설립근거	『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』				전화번호 : 02-3488-7373	
					홈페이지:www.krila.re.kr	
주요연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984. 9 지방행정연구소 개소 - 1986.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칭 - 1986.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정 - 2002, 2004 경영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- 지방자치단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정 	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출연기관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)	
인원현황 (‘16.8월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(무기)	
	65명		63명		2명	
임원 (‘16.8월 기준)	직책 (직책명)	성명 (익명처리)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임기 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	
	원장	하○○	경북대 행정학부 교수		2015.04.13~2018.04.12	
	당연직이사 (비상임)	22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자부(5) : 지방행정연구원장, 지방행정연수원장, 자치제도정책관, 지역발전정책관, 지방재정정책관 - 광역 시·도(17) : 기획관리(조정)실장 		당해직위 재임기간	
	임의직이사 (비상임)	8인	학계 전문가		2015.06.08~2017.06.07	
주요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·연구 -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평가 및 연구 -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·연구 등 					
자본금 ¹⁾ (단위:백만원)		37,219			출연액 (단위:백만원)	
최근3 년간 예산 현황 (단위: 백만원)	연도		2014	2015	2016	자산
	일반 회계	예산액 ²⁾	8,171	8,227	8,270	
		지자체 지원액 ³⁾	1,600	1,700	2,550	
	특별 회계	예산액 ²⁾	-	2,725	4,673	자본 ¹⁾
지자체 지원액 ³⁾		-	1,600	-		
2015년 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		총수익			총비용	
		10,302			9,014	
					당기순이익	
					1,288	

1) 자본금은 자본(자산-부채)의 한 부분이며, 자본은 자본금, 자본잉여금,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

2)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

3) 해당 기관 예산액(2) 번항목)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

1-③ 출자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정책기획관실		출연	200,000천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자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·개발
- 지방행정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·연구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지원
- 사업기간 : 2017. 1 ~ 12월
- 출연금액 : 200,000천원(도비 100%)
- 주요내용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사업 지원
- 출연근거 :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 제3조3항

□ 산출기초

- 전국 16 시·도 균등출연 : 각 200,000천원 (세종 100,000천원)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합계	'09년	'10년	'11년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
출연금	517	-	-	-	-	67	100	200	150

□ 기대효과

- 충청북도의 지방자치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발굴
- 지방자치에 대한 객관적, 독립적 정책연구 활성화

□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이사회 의결(2014.12.23.)을 통해 전국 균등 출연을 합의한 바, 우리
도만 미출연 곤란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부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>

제6조(출자·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

제3조(출연금)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,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.

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,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3.8.]